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 유럽인권협약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인권 존중의 의무 -  
“관할권”의 개념과 책임 귀속

2021년 12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request to reproduce or republish a translation](#)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en/web/echr-ks/> 에서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일러두기 .....	4
서문.....	5
<b>I. 속지주의와 그 예외.....</b>	<b>7</b>
A. 속지주의와 그 범위 .....	7
1. 전통적 의미의 속지주의 .....	7
2.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이양 .....	9
3. 협약 제1조와 제56조의 관계.....	10
4. 민사절차나 형사절차 개시에 의해 생성되는 관할권적 관련성.....	11
B. 속지주의의 예외.....	15
1. 국제 무력 충돌의 적극적 단계.....	16
a.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적극적" 국가.....	16
b. 자국 영토에서 외국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소극적" 국가 .....	17
c. 일반적 검토.....	17
2. 청구인에 대한 권한 행사.....	17
a. 일반론.....	17
b. 외교 또는 영사 대리인의 행위 .....	17
c.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행위 .....	18
d. 협정에 따른 다른 국가의 주권 행사 .....	19
e. 자국 영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대리인의 무력 사용 .....	20
f. 기타 상황 .....	23
3. 특정 영토에서의 권한 행사 .....	23
a. 자국 영토 밖에서의 군사행동에 근거한 “적극적” 국가의 관할권 .....	24
i. “전통적인” 군사점령 .....	25
ii.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실제 설립 .....	28
b. 자국 영토에서 외국의 군사행동(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군사행동)이 수행되는 국가의 관할권 .....	32
<b>II.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다른 국가와의 국가 권한 공동 행사.....</b>	<b>35</b>
A. 유럽연합에 대한 위반 혐의의 귀책성: 보스포루스 가정 또는 동등한 보호의 원칙 .....	35
B. 유엔에 대한 위반 혐의의 귀책성.....	36
1. 국제 군사작전.....	36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국제 제재 .....	37
C.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위반 혐의의 귀책성.....	38
<b>인용 판례 목록 .....</b>	<b>39</b>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 VI,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서문

### 협약 제1조 - 인권 존중의 의무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본]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 HUDOC 키워드

체약국 (1) - 국가의 책임 (1) - 국가의 관할권 (1)

1.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약국의 약속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대해 협약에서 열거하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프랑스어본의 “*reconnaître*”, 즉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제1조의 의미에 따른 “관할권”은 이 체계의 필수 조건이다. 관할권 행사는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체약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03 및 여기에 수록된 판례).

2. 협약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평의회 자문의회(Consultative Assembly) 산하 법률행정사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nd Administrative Affairs)가 작성한 협약 제1조 초안의 본문에는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검토한 정부 간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Intergovernmental Experts)는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를 “관할권에 속한”이라는 문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 단행본에서 발췌한 문단은 이와 같이 수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초안은 본 협약의 혜택을 “서명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법률행정사무위원회는 ‘거주하는’이라는 문구가 너무 제한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협약의 혜택을 서명국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확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 서명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법률행정사무위원회는 ‘거주하는’이라는 문구를 ‘관할권에 속한’이라는 문구로 대체했으며, 이 문구는 UN 위원회 규약 초안 제2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Vol. III, p. 260)

3. 협약 제1조가 채택되기 전, 벨기에 대표는 1950년 8월 25일 열린 자문의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따라서 본 협약의 정식 조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어느 한 협약 당사국의 영토에 있으며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 사람을 위해 해당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도 없이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

4. 협약 준비문서는 이어서 “관할권에 속한”이라는 문구를 비롯한 제1조의 문구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제1조 본문은 추가 수정 없이 1950년 8월 25일 자문의회에서 채택되었다(*Collected Edition*, vol. VI, p. 132)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 19-20).

5. 협약 제1조의 목적상 “관할권”의 개념은 국제공법상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344).

6. 협약 제1조에서 의미하는 “관할권”의 존재 유무가 반드시 사건 본안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반드시 소송절차의 본안 단계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265).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청구인의 제소 근거가 되는 행위가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해당국이 해당 행위에

대해 실제로 협약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다르며, 후자의 문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본안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속한다(*Loizidou v. Turkey* (선결적 항변), §§ 61 및 64). 또한 협약 제1조의 의미에 따른 관할권에 대한 문제와 피청구국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구별해야 하며, 후자의 문제는 청구인이 협약 조항에 대해 인적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측면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Loizidou v. Turkey* (본안), § 52). 재판소는 보통 책임 귀속성 및 책임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며, 협약 당사국은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재판소는 일부 특정 사건에서 두 개념을 구별하고 별도로 검토하는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Assanidze v. Georgia* [GC], § 144).

7. 그 밖에도, 재판소는 피청구국 정부가 심리 부적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권에 대한 문제나 피청구국이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직권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Stephens v. Malta (no. 1)*, § 45; *Vasiliciuc v. the Republic of Moldova*, § 22); *Veronica Ciobanu v. the Republic of Moldova*, § 25).

8. 재판소는 제1조에 관한 판례에서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제1조는 관련 규칙이나 조치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으며,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에 관한 어떠한 부분도 협약에 따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N.D. and N.T. v. Spain* [GC], § 102). 그러나 재판소에 제기된 모든 사건에서 협약 제1조에 따른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음”이라는 증거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히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치하는 추론이 공존하거나 또는 반박할 수 없는 비슷한 사실의 추정이 공존할 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265). 협약에 따른 관할권 유무를 결정할 때, 재판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국제법의 관련 규칙을 고려한다(*Jaloud v. the Netherlands* [GC], § 141). 그러나 재판소는 전반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Loizidou v. Turkey* (본안), § 53).

9. 협약 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으나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관할권을 떠난 사람과 해당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했던 적이 없는 사람을 구별할 원칙적인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관할권은 침해 혐의의 심각성이나 강도에 좌우되지 않으며, 이들 요인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논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Abdul Wahab Khan v. the United Kingdom* (dec.), § 26).

10. 체약국 국가기관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다른 개인의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할 경우, 해당 체약국에 협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18; *Solomou and Others v. Turkey*, § 46).

11. 협약 목적상, 관련성에 관한 유일한 문제는 국가의 국제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국내 제도에 따라 협약 위반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회원국이 모든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각 협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협약은 협약에 담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회원국의 상급 기관에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 의무에 따라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하위 수준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발생한 침해를 시정해야 한다. 회원국의 상급 기관은 하급 기관에 협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준수를 보장할 능력이 없음을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협약 제1조에서 회원국에 부과한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 협약 준수를 보장하는 국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첫째, 제1조 규정상 회원국 “관할권”의 어떤 부분도 협약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회원국이 “관할권” 전체에서 협약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에 의해 확인된다(*Assanidze v. Georgia* [GC], §§ 146-147). 요컨대, 재판소에 제기된 쟁점은 조지아 국가 자체의 책임일 뿐 국내 당국이나 기관의 책임이 아니다. 다양한 국가기관 또는 법원에 대응하거나 기관 간 분쟁 또는 국내 정치 분쟁을 심리하는 것은 본 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ibid.*, § 149).

12. 일반적으로 국가는 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국가기관은 소속 직원이나 하급 기관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국가기관은 협약 준수를 강제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준수를 보장할 능력이 없음을 구실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19).

## I. 속지주의와 그 예외

### A. 속지주의와 그 범위

#### 1. 전통적 의미의 속지주의

13. 제1조에서 의미하는 국가 관할권은 일차적으로 영토적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문의 문맥 및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협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관할권에 속한”이라는 문구를 해석했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99). 따라서 협약 제1조에는 이러한 통상적이고 본질적인 관할권의 영토적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관할권에 대한 다른 근거는 예외적인 것이며 각 사건의 특정 상황에서 특별한 정당성이 요구된다(*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 61, 67, 71, 및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04,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14. 청구인이 현재 체약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국에 영토 관할권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협약 제1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점에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오직 청구인의 소송상 청구 내용이다(*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63).

15.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사건의 청구인들은 유고슬라비아가 체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베오그라드에 있는 세르비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폭격하여 가족이 사망한 것(그리고 청구인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제소했다. 재판소는 체약국의 귀책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행위가 행해진 장소나 해당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장소가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로 인해 협약 제1조의 목적상 해당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소는 협약이 협약 제56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본질적으로 지역적 성격을 가진 다자조약이며, 특히 체약국의 법적 공간(*espace juridique*)에서 적용되는 조약임을 거듭 강조했는데,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위 법적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약은 체약국의 행위를 전 세계에 적용할 의도로 체결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국과 청구인들 사이에 관할권적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문제의 역외 행위로 인해 자신과 사망한 가족들이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또한 *Marković and Others v. Italy* (dec.) 참조).

16. 한 국가의 관할권은 통상적으로 해당국 영토 전체에 걸쳐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Assanidze v. Georgia* [GC], § 139); *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345). 협약은 제56조제1항에 언급된 경우(종속 영토)를 제외하고 협약 적용에 있어서의 영토 배제를 금지한다(*ibid.*, § 140 및 *N.D. and N.T. v. Spain* [GC], § 106). 피청구국이 단일국가인지 연방국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1969년 11월 22일 미주인권협약(제28조)과는 달리, 유럽협약은 연방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연방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연방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미주인권협약 제28조의 연방 조항과 유사한 묵시적 연방 조항이 유럽협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로는 불가능함), 연방 조항은 연방국에 "[연방을 구성하는 주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헌법...에 따라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방국을 모든 책임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실, 법 정책, 즉 당사국 간 평등을 유지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성 때문에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협약 적용가능성이 특정 당사국들의 영토 가운데 일부에만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협약 전체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인권 보호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시에, 당사국 간 차별, 즉 영토 전체에 협약 적용을 수락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차별이 허용될 것이다(*Assanidze v. Georgia*, §§ 141-142). 또한, 국가의 영토적 실체에 관한 권한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기관들이다(*ibid.*, § 148).

17.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구인 한 명이 영국과 아일랜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두 청구의 틀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의 청구인은 아일랜드 영토에서 남편이 살해된 사건과 북아일랜드(따라서 영국)에서 동생이 살해된 사건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협약 제2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청구에서, 청구인은 영국 국가기관이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전반적인 테러 활동에 맞서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남편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영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또한 아일랜드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살해된 것에 영국 국가기관의 행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청구인이 영국 국가기관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해 어떠한 주장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가 영국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남편이 살해된 사건에 관한 한, 해당 청구는 협약의 장소(*ratione loci*), 즉 장소적 관할권과 양립할 수 없었다. 한편, 영국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살해는 영국에 "관할권"을 부여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살해에 대한 청구는 장소적 관할권과 양립할 수 있었다(*W.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북아일랜드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사건에서, 위원회는 청구인의 남편이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했으나 청구인의 동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의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구인의 동생이 살해된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아일랜드 헌법 제2조와 제3조가 북아일랜드 영토에 대한 헌법적 주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아일랜드 헌법이 북아일랜드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W. v. Ireland*, 위원회 결정).



18. 국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울타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국가가 국경선에서 시작되는 자신의 영토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제, 변경 또는 제한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N.D. and N.T. v. Spain* [GC], § 109). 인용된 사건은 말리인 한 명과 코트디부아르인 한 명이 모로코로 송환된 것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들은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스페인령 멜리야를 둘러싸고 3중으로 평행하게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불법적으로 스페인 영토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청구인들은 간신히 안쪽 울타리 꼭대기까지 도달했으나,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스페인 국경수비대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고, 이후 모로코 국가기관에 넘겨졌다. 재판소는 멜리야 국경에서 스페인의 자국 영토에 대한 실효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과 관련하여 “권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약 상황”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조약 제1조에서 의미하는 스페인의 “관할권”에 속했다. 재판소는 불법 이민 관리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백 명의 비국적자로 구성된 집단이 국경 울타리를 넘어 스페인으로 입국함) 이로 인해 재판소의 논증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반대로, 협약의 보호를 받는 권리와 보장의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법체계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민 관련 맥락의 특수성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영역을 정당화할 수 없다(*ibid.*, §§ 104-111).

19. 그 밖에도, 최근 재판소는 리투아니아 국경 공무원들이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체첸인 가족의 망명 신청을 세 번 모두 거절한 행위가 리투아니아에 책임이 있는 행위이며, 따라서 협약 제1조에 따라 해당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행위임을 명시했다(*M.A. and Others v. Lithuania*, § 70).

20. 국가의 해외 외교공관 영토와 관련하여, 대사관 구내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행정통제만으로는 대사관 구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자국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19). 따라서 재판소는 레바논 주재 벨기에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4명의 시리아 국민에 대한 벨기에의 영토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4명의 시리아 국민은 해당국의 영토나 국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국의 영토에서 추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ibid.*, § 120).

21. 위반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 초국경적 또는 초국가적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 국가 관할권이 일차적으로 영토적이라는 원칙에 따라, 복수의 체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각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협약의 장소적(*ratione loci*) 관할권과 양립할 수 있다(*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 160).

## 2.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이양

22. 협약 제19조는 국제법에 따른 영토주권 이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결할 권한을 재판소에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소는 협약 제19조에 따른 권한 행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협약 및 그 의정서에서 당사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국이 특정 영토에 대해 행사하는 관할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재판소는 위반 주장이 제기된 협약 조항이 국내법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 주권 이양 문제에 대한 결정을 피할 수 없다. 확립된 판례법에 따라, 재판소는 청구 본안을 심사할 때 국내법 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따라서 적용 가능한 “국내”법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GC] (dec.), §§ 341-342).

23. 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2014년 2월 27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세바스토폴을 포함한 크림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해 일련의 청구를 제기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가 간 사건의 청구 적격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여러 국제중재재판소, 스위스 연방법원(Swiss Federal Court)에서 채택한 접근법을 따른 후, “크림반도 합병” 또는 이에 따른 해당 영토의 법적 지위라는 사안에 대해서 국제법상 “합법성”에 관한 추상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사안은 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재판소에서 다른 분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243-244 및 339).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크림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합병하는 “통일 조약”을 체결한 2014년 3월 18일 이전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눈 후 두 기간을 별도로 다루는 방식으로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다. 2014년 3월 18일 이전 기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3-140) 판례에 정의되어 있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따랐으며, 문제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적 통제”를 근거로 관할권 역외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반대로, 2014년 3월 18일 이후 기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2014년 3월 21일의 “통일 조약”이 국제공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양국 중 어느 하나의 영토를 변경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 변경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첫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으로 확정된 자국 영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점, 둘째, 문제의 국가 모두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통보하지 않은 점, 셋째,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크림반도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유형의 변경도 인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청구국이 양 당사국 중 어느 하나의 영토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주장을 소송절차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에 대한 심리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크림반도에 대한 피청구국의 관할권이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실효적 통제”의 형태 또는 성격을 지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재판을 진행했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338-351). 요컨대, 청구국 정부가 행정 관행의 피해자로 주장한 사람들은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놓여 있었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352).

### 3. 협약 제1조와 제56조의 관계

24. “적용 영역”이라고 제목이 붙은 협약 제56조(1998년 제11의정서 발효 전까지 제6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본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국가도 비준 시 또는 이후 언제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접수 후 30일째부터 통고에서 지정된 영역에 적용된다.
3. 본 협약의 규정은 지역적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영역에 적용된다.
4. 본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이후 언제라도 그 선언이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 본 협약 제34조에 따라 개인, 비정부조직 또는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법원이 수리할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5. 재판소가 제1조에 관한 일관적인 판례법(특히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참조)에서 공식화한 협약 역외적용의 원칙은 협약 초안 작성 시 체약국들이 관련 국제관계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해외 영토에 적용하기로 한 선언 제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제56조에 따라 선언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제1조에 따라 협약이 해당국의 법적 공간 외부에 위치한 영토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Quark Fishing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67-75).

26. *Quark Fishing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한 어업회사는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SGSSI) 당국이 특정 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제소했다. 청구인 회사는 영국 고등법원에 제소하여 문제의 결정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협약 제1의정서(재산의 평화적 향유권)가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 확대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해당 영국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재판소는 영국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가 협약 제56조의 목적상 영국의 책임하에 있는 지역이지만, 영국이 제1의정서의 적용 범위를 해당 영토로 확대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소는 제1조의 목적상 "실효적 통제"를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실효적 통제" 원칙이 제56조에 규정된 선언 제도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식민지 체제에 맞게 고안된 선언 제도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이제는 협약 초기 당시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오직 계약국만이 통상적인 서명 및 비준 절차를 통해 선언 제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해당 영토에 대해 협약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재판소가 해당 영토에 대해 제1의정서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재판소가 영국이 해당 영토에 대해 제1의정서를 확대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았다. 협약은 어떤 계약국도 특정 의정서를 비준할 의무나 국가 관할권에 관한 결정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27.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청구인 1,786명은 현재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IOT)로 알려진 차고스 제도(Chagos Islands)의 옛 주민이거나 이들의 후손이었다. 이들 차고스 제도 주민은 미국이 차고스 제도의 한 섬에서 방위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에 영국 정부에 의해 모국에서 사실상 추방당하거나 귀국을 금지당했다. 무력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차고스 제도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집과 생계수단을 잃은 후 매우 빈곤하게 살아갔다. 1982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차고스 제도 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합의를 통해 종료되었다. 협약의 장소적 관할권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소는 영국이 개별 청구권을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 주민으로 확대하는 제56조에 따른 통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또한 제1조에 따라 허용되는 관할권의 근거(특히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참조)가 불쾌한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협약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56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56조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의미도 명확하며, 바람직하다고 주장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혹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제56조 적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영국의 정치인 또는 공무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협약의 법적 공간 밖에 위치한 지역을 해당국의 관할권에 속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제6조에 따라 영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소한 경우, 재판소의 판단은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한정되어야 한다.

#### 4. 민사절차나 형사절차 개시에 의해 생성되는 관할권적 관련성

28. 개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당사국에서 절차를 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국이 이러한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Abdul Wahab Khan v. the United Kingdom* (dec.), § 28). 만약 개인이 해당국에 연고가 있을 경우 이는 다른 문제가 된다.

29. 따라서,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피청구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을 해당국 법원에 제기한 경우 조약 제1조의 목적상 명백한 “관할권적 관련성”이 존재한다. 단, 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가 쟁점이 되었으며, 절차의 결과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국한된다(*Marković and Others v. Italy* [GC], § 54; 또한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dec.), § 66 참조). 실제로, 국내법에서 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주장된 권리가 언뜻 보기에 협약 제6조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 재판소는 해당 국내 절차가 국내 법원에 제기된 다른 절차와 같은 수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소송의 원인으로 주장된 사건의 역외적 성격이 제6조의 적용가능성과 절차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국의 장소적 관할권(*ratione loci*)과 인적 관할권(*ratione personae*)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내 법원에 민사절차가 제기될 경우, 협약 제1조에 따라 국가는 제6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해당 소송절차에서 보장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Marković and Others v. Italy* [GC], §§ 53-54).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이탈리아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역외적 성격의 사건(및 NATO군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습)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장소적 관할권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는 피청구국 정부의 항변을 검토했다.

30.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국내법에 따라(예: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에 기초하여) 해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범죄 수사나 형사절차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범죄 수사나 형사절차의 착수는 해당국과 나중에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의 친척 사이에 제1조의 목적상 관할권적 관련성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다(*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 188). 이 접근법은 제2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절차적 의무는 제2조 조항의 실제적 측면과 관련된 행위에 의해 촉발되긴 하지만,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의무로 발전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 의무는 제2조에서 발생하는 분리 가능한 의무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망 사건이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국을 구속할 수 있다(*ibid.*, § 189,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또한,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할권적 관련성이 확립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행위가 체약국의 관할권에 속하거나 해당 행위의 책임이 해당 체약국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Hanan v. Germany* [GC], § 143).

31. 반면, 체약국이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모든 사건에서 관할권적 관련성이 확립되어 제2조에 의해 부과된 절차적 의무가 해당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사망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체약국에 대해서만 촉발되지만, *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43-44) 사건에서 수립된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특수성(*special features*)”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재판소는 수사 착수에 대한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어떤 “특수성”이 관할권적 관련성의 존재를 촉발하는지 추상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성은 필연적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건마다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 190); *Carter v. Russia*, 2021, § 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판소는 이미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공식화된 피해자와 피청구국 간 관할권적 관련성 확립 여부에 관한 원칙이 협약 제3조와 제5조에도 적용된다고 역설했다(*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 157).

32. 따라서, 러시아 국민이 키프로스에서 폭력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한 후 키프로스 및 러시아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Rantsev v. Cyprus and Russia*, (§ 243-24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서에 언급된 사실이 관할권 밖에서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러시아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신매매가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재판소는 러시아가 인신매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해 인신매매 혐의를 수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상황을 수사하기 위해 자국 영토주권의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는지 검토할 권한이 있었다(§§ 206-208). 그뿐만 아니라, 협약 제2조의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소의 본안을 판단한 재판소는 제2조에 따라 회원국의 형법이 국가 영토 밖에서 자국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 관련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비록 피해자가 러시아 국민일지라도 러시아 수사기관이 키프로스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 의무는 없었다(§§ 243-245).

33. *Aliyeva and Aliyev v. Azerbaijan* 사건에서, 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던 중 다른 두 아제르바이잔 국민과 연루된 상황에서 살해된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부모가 제기한 청구를 검토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으로 이관되었으나, 아제르바이잔 국가기관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들에 대한 절차를 중단했다. 재판소는 아제르바이잔이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에서 착수한 범죄 수사를 이어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할 1993년 민스크 협약(Minsk Convention)에 따른 의무를 수락했으므로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지켜 해당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과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에서 착수한 범죄 수사를 계속 수행할 경우 아제르바이잔이 해당 사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에 따라 해당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소적 관할권에 대한 쟁점을 직권으로 제기했다. 따라서 제1조에서 의미하는 아제르바이잔의 관할권은 아제르바이잔 국가기관이 관련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의해 이전에 시작된 절차를 이어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었다 (§§ 55-57).

34. 키프로스 공화국(Republic of Cyprus) 영토에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TRNC")의 옛 주민 몇 명이 살해된 것과 관련된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사건에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당국이 해당 살인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청구인과 터키 사이에 "관할권적 관련성"이 확립되었으며,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당국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터키에 귀속시켰다. 또한, 키프로스의 상황과 관련하여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우선 국제사회는 터키가 키프로스 북부를 점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제법상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키프로스는 협약의 목적상 터키의 실효적 통제를 받고 있다. 둘째, 살인사건 용의자들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도주했고, 그 결과 키프로스 공화국은 이 용의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범죄 수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협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특수성"과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협약 제1조에 따른 터키의 관할권이 확립되었다고 판단했다(*ibid.*, §§ 191-197).

35. *Romeo Castaño v. Belgium*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자유조국바스크(ETA)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스페인 국가기관이 발부한 유럽체포영장을 벨기에 국가기관이 집행하지 않았으며 청구를 제기했다. 스페인에서 청구인들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해당 조직원은 벨기에에 거주했으며, 벨기에에는 스페인에서 이 조직원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했다. 앞서 언급한 *Güzelyurtlu and Others* 및 *Rantsev* 사건과는 달리, 제2조의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제기된 청구는 벨기에 정부가 살인 사건을 조사할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피청구국과의 "관할권적 관련성재판권"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전술한 판결에

명시된 원칙이 이 사건에 준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살인 용의자가 벨기에로 도주했고 스페인 국가기관이 벨기에 상대 기관에 양국에 구속력이 있는 유럽체포영장 제도에 따라 범인의 체포와 인도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청구인들과 벨기에 간 “관할권적 관련성”이 확립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ibid.* , §§ 38-42).

36. *Hanan v. German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Güzelyurtlu and Others* 판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관할권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했다. 제2조의 절차적 측면만을 다룬 이 사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VII장에 의거하여 내린 명령에 따라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 중인 독일인 대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반군에 의해 피랍된 연료 탱커 2대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고, 그 결과 탈레반 반군과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 독일 검사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령의 형사책임이 없다고 보아 결국 수사를 중단했다. 재판소는 역외 관할권 행사가 아닌, 해당국의 장소적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자체가 해당국과 피해자 사이의 관할권적 관련성을 확립하기에 충분했다는 원칙이 이 사건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 검찰이 수사한 사망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 체계에 따라 협약 적용영역 밖에서 역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사가 시작된 점을 유일한 근거로 관할권적 관련성을 확립할 경우 역외 군사작전 중 발생하는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일한 작전에 참여하는 체약국에 협약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할권적 관련성 확립은 협약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관할권적 관련성이 확립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체약국이 자국 관할권 밖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 독일은 문제의 공습이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군 소속 군인의 개별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관습국제인도법에 따라 해당 공습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둘째,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법적 이유로 자체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국제안보지원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1조제3항에 따라, 파견국은 자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행할 수 있는 범죄나 군을 위반과 관련하여 국제안보지원군 파견 인력에 대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셋째, 독일 검찰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비준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독일군이 해외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나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에서 독일 국민의 책임 유무를 밝히기 위한 범죄 수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협약 제2조에 따른 수사에 대한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협약 제1조의 목적상 관할권적 관련성의 존재를 확립하는 “특수성”을 구성했다( *ibid.* , §§ 134-145).

37. 재판소는 전 러시아 보안국 요원이자 반정부 인사인 러시아 망명자 독살 사건과 관련하여 협약 제2조의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적격성을 인정했다. 독살 사건은 러시아 정부 요원에 의해 영국에서 발생했다. 재판소는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발생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 국내법 조항에 따라 러시아 국가기관이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점에 주목했다. 수사절차 진행은 피해자와 러시아 사이에 "관할권적 관련성"을 확립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적의 살인 용의자 2명은 러시아로 돌아온 후 러시아 국가기관이 이들 중 한 명에 대한 영국 국가기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등 범죄인 인도에 대해 헌법적 보호를 받았다. 그 결과, 영국 국가기관은 이들 용의자에 대해 형사기소를 할 수 없었다. 러시아 정부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가 제기된 피의자에 대해 전속적 관할권을 가졌던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구성했고, 이에 따라 제1조에 따른 피청구국의 관할권이 확립되었다. 다른 어떤 결과도 “협약의 법적 공간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불처벌 관행에 맞서는 노력을 약화했을 것이다( *Carter v. Russia* , 2021, §§ 133-135).

38.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건은 협약 제2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의 틀에서 체약국 국가기관이 착수한(또는 착수했어야 했던) 형사절차와 관련된 사건이다. 반면, 해당 논거는 해당 국가와 기존 어떠한 연고도 없는 개인이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한 절차와 같이, 특정 국가의 선택에 협약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행정절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민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인이 세계 어느 지역에 있던 관계없이 그의 일방적인 선택에 기초하여 협약을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게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무제한적인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사국이 이민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이민 신청자를 해당국의 관할권에 두기에 충분할 경우에, 정확히 바로 그 의무가 생성될 것이다. 해당 개인은 신청서 제출을 통해 관할권적 관련성을 생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제3조에 따른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23; *Abdul Wahab Khan v. the United Kingdom* (dec.), § 27). 이러한 협약 적용 범위 확대는 또한 당사국들이 본 협약을 비롯한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거주, 추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공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재판소가 인정한 원칙을 부정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24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 B. 속지주의의 예외

39. 재판소는 지금까지 체약국이 자국 영토 경계 밖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했다. 각 사건에서, 국가가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소의 판결이 요구되고 이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ibid.*, § 105;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2). 사실, 국제법은 국가 관할권의 역외 행사를 배제하지 않지만,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해 제시된 근거(국적 및 국기 포함)는 일반적으로 다른 관련 국가의 주권적 영토권에 따라 정의되고 제한된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99).

40. 또한, 어떤 사건이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약 제1조의 목적상 해당 사건에서 역외 관할권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피청구국의 영토 밖에 거주했으나, 해당국에 보호 의무가 있는 기존의 가족생활 또는 사생활에 따라 관할권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개인이 해당국 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해 내려진 결정과 관련된 제8조 사건의 상황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09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마찬가지로, 제1조 조항은 "관할권"에 대한 "원인과 결과"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역외 행위는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역외 관할권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 64).

41. 속지주의 원칙 대한 예외로서, 제1조에 따른 체약국의 관할권은 자국 영토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의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3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국가의 자국 영토 외부에서 관할권을 갖는 경우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a. 청구인 *개인*에 대해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또는 통제)에 기초한 관할권(관할권의 대인적 개념 또는 *인적 관할권*)
- b. 해당 외국 *영토*에 대해 실제로 행사하는 통제에 기초한 관할권(관할권의 영역적 개념 또는 *장소적 관할권*)

42. 재판소는 협약 제19조에서 “협약 및 그 의정서에서 당사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보장”할 권한이라고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리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 피청구국이 특정 영토에 대해 행사하는 관할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341).

43.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관할권 개념을 연속해서 검토하기 전에, 재판소는 적극적 교전 단계 중 외국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의 관할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 1. 국제 무력 충돌의 적극적 단계

44. 적극적 교전 단계(전투 단계)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과 적극적 교전 단계가 종료된 후 “점령” 단계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은 구별되어야 한다(*Georgia v. Russia (II)* (본안), § 83).

### a.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적극적” 국가

45. 재판소는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 타국의 영토에 진입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체약국의 행위가 적극적 교전 단계 중 발생한 행위인 한, 체약국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장소적 관할권이나 인적 관할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판례에서 어떤 국가가 역외 관할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 무장 공격, 폭격 또는 포격 등과 같은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자 적군과 무력 충돌과 전투를 벌이는 현실 자체가 한 지역에 대해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자 적군과 무력 충돌과 전투를 벌이는 현실은 개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배와 통제”의 어떠한 형태도 배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근접성 요소를 포함하는 고립되고 구체적인 행위와(“국가기관의 지배와 통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국 군대/경찰의 폭격 등, 아래 참조) 적의 전투능력을 상실시켜(*hors de combat*)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려는 교전국의 폭격 및 포격을 구분했다. 그 밖에도, 외국 영토에서 적극적 교전 단계가 진행 중일 때는 국가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협약 제1조의 해석은 체약국들이 자국 영토 밖에서 벌어지는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 협약 제15조에 따라 협약상의 의무를 축소하지 않는 관행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는 체약국들이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제1조의 의미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eorgia v. Russia (II)* (본안), §§ 125-139).



46. 반대로, 실제 교전이 중단된 이후의 군사점령은 해당 영토 및/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실효적 통제에 기초하여 "적극적" 국가에 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Georgia v. Russia (II)* (실질), §§ 161-175).

## b. 자국 영토에서 외국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소극적" 국가

47. 같은 논리로, "소극적" 국가(자국 영토에서 외국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국가)가 협약 제1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교전 단계에서 이러한 관할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재판소는 관련 청구에 대해 심리 부적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소의 판례법은 "소극적" 국가일지라도 개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외교적, 사법적, 정치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면, 전반적으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적극적 교전 단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무력 충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한편으로는 실행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보호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다(*Shavlokhova and Others v. Georgia* (dec.), 2021, §§ 32-34; *Bekoyeva and Others v. Georgia* (dec.), 2021, §§ 37-39).

## c. 일반적 검토

48. 재판소는 자국 영토 외부의 다른 체약국 영토에서 발생한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적극적 교전 단계 중 피청구국의 작위 및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자국 영토에서 실제 교전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협약 제1조의 "관할권" 개념을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의가 제기된 사건의 수, 제시된 증거의 양, 관련 상황을 규명하는 것의 어려움, 이러한 상황이 주로 협약의 범규범(특히, 국제인도법 또는 무력충돌법) 이외의 범규범에 의해 주로 규율된 사실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지금까지 확립된 "관할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넘어 판례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피청구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전쟁 행위와 적극적 교전 행위를 평가하는 업무를 재판소에 일임하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임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체약국들이다. 이는 국가들이 어떤 법체계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들은 국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매우 상세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Georgia v. Russia (II)* (본안), §§ 139-143).

## 2. 청구인에 대한 권한 행사

### a. 일반론

49. 국가 차원의 결정이 해외 거주자의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국의 관할권이 영토 밖에 있는 이러한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12). 협약이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소는 청구인과 피청구국 간의 관련성 측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에 대해 권한이나 통제를 실효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12-113).

### b. 외교 또는 영사 대리인의 행위

50. 국가의 관할권은 외교 또는 영사 대리인이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국제법 규칙에 따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국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 73). 체약국 국민이 해외에

살거나 거주하더라도 체약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교 및 영사 대표는 협약에 따라 자국의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직무를 행사한다(*X. v. Germany*, 위원회 결정). 청구인이 실제로 자신의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했으나 해당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해당국 외교 및 영사 대리인의 작위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해당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51.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청구인(수데텐도이치(*Sudetendeutsch*)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독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은 독일 국적자)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의 아내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결국 모로코 영토에서 추방당하도록 유발한 모로코 주재 독일 영사 대리인들의 행위(*X. v. Germany*, 위원회 결정, 1983);
- 영국 국적의 청구인이 친부가 요르단으로 데려간 아동의 양육권 회복을 위해 암만(요르단) 주재 영국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X.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3);
- 동독 주재 덴마크 대사가 덴마크 대사관에 피신한 독일인 집단을 내보내기 위해 동독 경찰을 부른 사건(*M. v. Denmark*, 위원회 결정, 1992).

52. 반대로, 재판소는 자신의 국적국 중 한 국가에 구금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또는 복수국적자)가 다른 국적국에서 해당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나 영사 조력을 거부한 경우 다른 국적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채 열어 두고 있다(실제로, 국가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국제관습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이중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재판소는 벨기에-모로코 이중국적자가 모로코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벨기에 국가기관이 영사 조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협약 조항에서 행동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추론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판소는 벨기에 국가기관이 결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벨기에 국가기관에서 모로코 국가기관에 제시한 방안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은 벨기에 국가기관이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청구인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를 가했던 모로코 국가기관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기 때문이었다(*Aarrass v. Belgium (dec.)*, 2021, §§ 37-41).

53. 재판소는 시리아 국민 4명이 출신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레바논 주재 벨기에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발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벨기에가 이들 시리아 국민 4명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첫째, 청구인들은 자국 대사관의 보호 혜택을 받으려는 벨기에 국민이 아니었다. 둘째로, 어느 시기에도 외교 대리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실제로 다른 대사관을 찾아가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베이루트에 소재한 레바논 주재 벨기에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무런 방해 없이 벨기에 대사관을 나갈 수 있었다(*M.N. and Others v. Belgium (dec.)* [GC], § 118).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처럼 외교 대리인들이 단지 “우편함”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점은 사건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정 책임이 벨기에 본국의 국가기관에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파견된 외교 대리인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 또한 사건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ibid.*, § 114).

### c.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의 행위

54. 외교 및 영사 대리인이 행한 행위 외에, 국가의 역외 관할권 행사로 인정된 다른 사례에는 해당국에 등록된 또는 해당국 국기를 게양한 비행기 또는 선박에 탑승한 외교 및 영사 대리인의 해외 활동과 관련된 사건 등이 있다. 국제관습법과 조약 조항은 관련국이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행사하는 역외 관할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정의했다(*Cyprus v. Turkey*, 위원회 결정;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 73; *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 65); *Bakanova v. Lithuania*, § 63;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 75).

#### d. 협정에 따른 다른 국가의 주권 행사

55. 재판소는 체약국 정부가 주재국 정부의 동의, 요청 또는 묵인에 따라 자신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체약국의 역외 관할권 행사를 인정했다(*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 71). 따라서, 체약국의 국가기관이 관습, 조약 또는 기타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행정 또는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체약국은 문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해당 영토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한 이러한 기능 행사로 발생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5).

56.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자를 구금하기 위해 유럽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인터폴이 발부한 국제체포영장을 재발부하고 인터폴이 국제 의무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금이 다른 국가에 의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요청국은 협약에 따라 해당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Vasiliciuc v. the Republic of Moldova*, §§ 23-24; *Stephens v. Malta* (no. 1), §§ 51-54). 체포영장에 요청국 국가기관이 감지할 수 없었던 기술적 오류가 있는 경우, 요청국은 자국 국가기관이 국내법에 따라 발부하고 다른 국가가 국제 의무를 준수하여 집행한 해당 불법적인 체포영장에 대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ibid.*, § 52).

57. 위원회는 *X. and Y. v. Switzerland* (위원회 결정) 사건에서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심사했다. 이 사건에서 한 독일 국민은 스위스 연방기관의 스위스 영토 및 리히텐슈타인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제소했다(당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협약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았음). 위원회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협정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이 스위스 국가기관의 입국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없었다는 점과 오직 리히텐슈타인 국가기관만이 입국 금지 조치의 영역적 범위에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할 권리가 있었다는 점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위스가 스위스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와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금지 조치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에서 발생한 영향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실, 양국 간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을 대표하여 행동한 스위스 국가기관은 실제로 스위스의 국가 관할권에 따라 행동했다. 양국 간의 협정에 따르면, 스위스 국가기관은 스위스법에 따라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으며, 스위스 국가기관의 행동이 단순히 리히텐슈타인 영토까지 확장되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입국 금지 조치는 스위스 관할권에 따라 내려졌고, 이 조치가 리히텐슈타인까지 확장되었다. 위원회는 리히텐슈타인 영토에서 효력을 갖는 스위스 국가기관의 조치가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적용 대상자를 스위스의 관할권에 포함시킨다고 결론지었다.

58. 재판소는 특히 1993년 헌법 개정 전(중요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안도라 공국은 협약에 서명하거나 이를 비준하지 않았음) 안도라 공국(Principality of Andorra), 프랑스, 스페인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다룬 *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사건에서 상당히 유사한 문제를 검토했다. 청구인들은 판사 1명(안도라 공동 영주, 즉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헬 주교가 차례로 임명하는 프랑스 또는 스페인 판사), 주교 측 사법관 1명(우르헬 주교가 임명), 프랑스 측 사법관의 위임을 받은 프랑스 판사 1명(프랑스 공동 영주, 즉 프랑스 대통령이 차례로 임명)의 세 명으로 구성된 안도라 관할 법원에서 무장 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안도라법에 따라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복역할 수 있었고, 프랑스에서 복역하기로 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재판에서 공정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안도라 국가기관의 행동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프랑스 판사나 스페인 판사가 안도라 법원에 배석했지만, 이들이 프랑스나 스페인 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안도라 법원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안도라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프랑스나 스페인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실도 피청구국들이 안도라에서 청구인들의 재판에 간섭하려고 시도했음을 시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안도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한, 청구인들은 프랑스나 스페인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았다(§ 96).

59. 같은 논리로, 재판소는 동티모르의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청구인이 사법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파견된 포르투갈 판사들에 의해 동티모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Brandão Freitas Lobato v. Portugal* (dec.) 사건에서 관할권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포르투갈 판사들이 포르투갈이 아닌 동티모르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했으며, 포르투갈 국가기관은 문제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무효로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추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판사들이 포르투갈에서 특정 직업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포르투갈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Judiciary, CSM)의 징계권(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 포함)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이나 심지어 포르투갈 판사들이 동티모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포르투갈 최고사법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시작했고 2건의 징계 절차가 착수된 사실조차 문제의 형사절차 상황에서 관할권적 관련성을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반대로, 청구인이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한 후 최고사법위원회에 의해 개시된 절차에서 자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한, 스스로를 포르투갈의 관할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60. 재판소가 피청구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예로는 *Gentilhomme, Schaff-Benhadj and Zerouki v. France*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알제리 남성과 결혼해 알제리에서 사는 프랑스 여성 3명이었다. 1962년 프랑스와 알제리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프랑스법에 따라 프랑스-알제리 이중국적 아동을 포함한 프랑스 아동은 알제리의 프랑스 학술문화사무국(French Academic and Cultural Office for Algeria, OUCFA)이 관리하는 프랑스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알제리 정부는 더 이상 알제리 아동을 프랑스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재입학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외교 공문(*note verbale*)을 알제리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 발송했다. 청구인들은 프랑스가 제1의정서 제2조, 협약 제8조, 제14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문제의 상황이 알제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언급했다. 알제리의 결정이 국제공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기본적으로 알제리 측에서 1962년 협정 준수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직 프랑스-알제리 협정에 근거하여 알제리 영토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던 프랑스 국가기관은 알제리의 결정이 청구인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동의 교육에 미친 영향을 신중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청구가 제기된 상황은 알제리에 책임이 귀속되는 결정으로 발생했으며, 알제리는 프랑스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자국 영토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에 책임을 귀속하지 못했다(§ 20).

#### e. 자국 영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대리인의 무력 사용

61. 일부 경우,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자국 영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대리인이 무력을 사용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국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는 개인이 제1조의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6). 이러한 상황의 전형적인 예로는 개인이 자국 영토 밖에서 국가의 대리인에게 인계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 161). 마찬가지로, 국가의 군대 또는 경찰이 국경 밖에서 급습이나 표적 작전 임무를 수행한 결과로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임무로 영향을 받은 개인을 해당국의 권한 및/또는 실효적 통제하에 두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 영토에서 표적 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권의 수호자이자 유럽의 평화, 안정,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협약의 실효성을 약화한다(*Carter v. Russia*, 2021, §§ 127-128). *Carter*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자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 한 국가 대리인의 계획적이고 비사법적인 표적 살인에 적용되었다(*Carter v. Russia*, 2021, § 130).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1조를 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협약 위반을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는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Issa and Others v. Turkey*, § 71).

62. 따라서 재판소는 다음 상황에서 청구인이 관련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 청구인인 쿠르디스탄 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 대표는 나이로비 국제공항(케냐)에서 터키 안보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 터키로 강제 송환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터키가 자국 영토 밖에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케냐 공무원에 의해 터키 안보 요원들에게 인계된 직후 터키의 실효적 권한 하에 있었고, 이에 따라 터키의 "관할권"에 속했다고 언급했으며, 터키 정부 또한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청구인은 터키 안보 요원들에 의해 신체를 구속당한 후 터키로 강제 송환되었고, 체포되어 터키로 송환된 후 터키 안보 기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해야 했다(*Öcalan v. Turkey* [GC], § 91).
- 청구인들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직후 영국군 2명의 살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후 바그다드 인근 영국군 수용시설에 억류되었다. 청구인들은 곧 이라크 국가기관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청구인들은 이라크 국가기관에 인도될 경우 교수형을 당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영국이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 수용시설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와 해당 시설에 억류된 사람들이 사실상 및 법률상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한, 청구인들이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dec.), §§ 86-89).
- 캄보디아에 등록되었으며 다량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프랑스 해군에 의해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나포된 화물선의 선원인 청구인들은 배가 브레스트에 도착할 때까지 프랑스군의 감시를 받으며 선실에 감금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나포된 시점부터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프랑스가 해당 선박과 선원에 대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 적어도 사실상 완전하고 배타적인 통제를 행사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다고 판결했다(*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 67).
- 소말리아 국민과 에리트레아 국민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3척의 선박에 나눠 타고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탈리아 세무 경찰과 해안경비대 선박에 의해 해상에서 나포된 후 이탈리아 군함으로 이송되어 출발지인 리비아로 송환되었다. 재판소는 공해를 향해하는 선박이 기국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공해상의 구조"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대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행사한 통제 수준이 낮았다는 주장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은 이탈리아 군함에서 발생했고, 승무원 모두 이탈리아 군인이었다. 청구인들은 이탈리아 군함에 탑승한 후 리비아 국가기관에 인도될 때까지 이탈리아 국가기관의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실상 및 법률상 통제를 받았다(*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 76-82).

63. 재판소는 또한 터키의 키프로스 북부 점령에 반대하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연속해서 발생한 3개 사건에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이 한 행동에 관하여 터키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유엔 완충지대(UN buffer zone)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난 뒤 다른 남성이 첫 번째 남성이 숨진 장소 인근 유엔 완충지대에 들어가 항의의 표시로 깃대에 오른 후 총격을 받아 숨졌다. 터키계 또는 터키계 키프로스인 군인들은 유엔 완충지대에 모인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특히 키프로스 영토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완충지대 밖에 있던 한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3명의 희생자 모두가 터키인 및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군인과 대리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터키의 권한 및/또는 실효적 통제 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따라서 터키의 관할권에 속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했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키프로스 주둔 유엔군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 키프로스 주둔 유엔군과 유엔 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디오 녹화물과 사진을 검토했다. 재판소는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가 민간인 시위대에 대한 터키계 키프로스인 경찰과 군인들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사망했으며, 터키군과 터키계 키프로스인 경찰이 완충지대에 있었음에도 공격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희생자를 돕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Isaak v. Turkey* (dec.)).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 남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피해자가 완충지대에 진입했고, 그가 오른 깃대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영토에 있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총알이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군에 의해 발사되었다고 언급했다(*Solomou and Others v. Turkey*, §§ 48-50).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의 청구인은 협약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터키가 아무런 통제도 행사하지 않은 영토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이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군의 총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Andreou v. Turkey* (dec.)). 따라서, 문제의 상황은 협약 제1조의 의미상 터키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으며, 협약에 따라 터키에 책임이 귀속되었다.

64.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결정에서, 재판소는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발사한 사격으로 테러 용의자인 청구인의 친척이 살해되었다고 이미 인정했으므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Pad and Others v. Turkey* (dec.), § 54).

65.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들이 영국에서 자행한 전 러시아 안보 요원이자 반정부 인사인 망명자의 표적 살인에 관한 청구 심리 적격 결정을 내렸다. 공개조사 결과 피해자는 희귀한 방사성 동위원소인 폴로늄 210에 중독되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édération)의 지시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두 명의 러시아 국민이 피해자에게 독을 투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규명되었다(이 두 명은 이후 영국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됨). 재판소는 이 표적 살인이 신체적 폭력 행사와 목표 대상인 피해자와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사전 모의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가 계획적이고 복잡한 작전의 결과로 살해당했음을 강력히 나타냈다. 피해자는 러시아 안보 요원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으며 폴로늄 210을 우발적으로 섭취했을 가능성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힘이 있는 두 명의 러시아 대리인의 신체적 통제를 받았으므로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충분한 관할권적 관련성이 확립되었다고 판결했다(*Carter v. Russia*, 2021, §§ 158-161 및 § 170).

66. 국가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개인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행사하고,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국가는 제1조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그의 상황과 관련된 협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협약의 권리는 “분리되고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7);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 74); *Carter v. Russia*, 2021, § 126).

## f. 기타 상황

67. 청구인과 피청구국 간의 관련성으로 인해 해당국이 청구인에 대해 실제로 권한 또는 통제를 행사했다는 결론이 가능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루마니아에서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동안 몰도바 미성년자가 익사한 사건이 몰도바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익사한 몰도바 미성년자가 루마니아 해안에서 참가한 여름 캠프가 몰도바 청소년 체육부 주관으로 마련된 행사였고 이 부처에서 3명의 공무원을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단체 지도자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에서 루마니아 공무원들이 피해자를 포함한 몰도바 청소년을 돌보는 데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Veronica Ciobanu v. the Republic of Moldova*, § 26).

## 3. 특정 영토에서의 권한 행사

68. 특정 영토에 대한 관할권의 “실효적 통제” 원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실효적 통제” 원칙은 체약국들이 협약 초안 작성 시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해외 영토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협약 제56조(구 제63조)에 따른 선언 제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제56조제1항은 모든 국가가 “지역적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역사적 이유로 협약에 포함된 이 메커니즘은 현재 상태에서 제1조의 “관할권”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효적 통제”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체약국이 제56조에 따른 선언을 통해 협약이나 의정서의 적용 범위를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해외 영토에 대해 확대하지 않은 상황과 서로 별개이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40; *Cyprus v. Turkey*, 위원회 결정).

69. 본 협약은 유럽의 공적 질서에 대한 헌법적 협약이다. 협약은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행동을 규율하지 않으며, 체약국이 다른 국가에 협약의 기준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으로 의도되지 않았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41).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사건에서 재판소의 인적 관할권은 협약의 한 당사국에만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한 협약국의 영토가 다른 협약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경우, 점령국은 원칙적으로 점령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영토의 주민은 지금까지 누려온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며, “협약의 법적 공간” 내에서 보호의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점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협약 제1조에 따른 관할권이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결정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 영토 외부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소는 판례법에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ibid.*, § 142,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70. 재판소가 지금까지 이 관점에서 검토했던 모든 사건은 한 체약국의 영토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른 체약국의 통제를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상실하는 경우 “관할권”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국가의 관할권과 책임에 대한 쟁점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통일성을 공격하는 경우, 다음에 대해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 자국 영토 밖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적극적" 체약국은 다음 세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a. 다른 국가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군사점령
  - b. 다른 국가의 반란 또는 내전에 대한 지원
  - c.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국제사회가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실체의 형태로 분리주의 체제를 수립하거나 이를 지원
2. 위 행동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소극적" 체약국

71.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두 경우에서 피청구국의 책임에는 각기 다른 논리가 적용된다.

### a. 자국 영토 밖에서의 군사행동에 근거한 “적극적” 국가의 관할권

72. “적극적” 국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주장된 사실이 실제로 협약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관할권” 내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73. 제1조에 따른 관할권이 국가의 고유 영토로 제한된다는 원칙의 예외 하나는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군사행동의 결과로 체약국이 자국 영토 밖의 지역에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의무는 체약국이 직접 통제하거나 체약국의 군대를 통해 혹은 종속된 지방 행정부를 통해 간접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06,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74. 사실 확인 결과 이처럼 영토에 대한 지배가 확립된 경우, 체약국이 종속된 지방 행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체약국의 군사 지원 및 기타 지원의 결과로 지방 행정부가 존속하는 경우, 체약국은 이러한 지방 행정부의 정책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제1조에 따라 통제국은 협약과 해당국이 비준한 추가의정서에 명시된 실체적 권리를 통제 중인 지역에서 완전히 보장할 책임이 있다. 통제국은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Cyprus v. Turkey* [GC], §§ 76-77;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8;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06). 그뿐만 아니라, 체약국이 자국 영토 밖의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 체약국의 책임은 해당 지역의 군인 또는 공무원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체약국의 군사 지원 및 기타 지원으로 인해 그 지역에서 존속하는 지방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된다(*Cyprus v. Turkey* [GC], § 77;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16).

75. 체약국이 진정으로 국경 밖의 영토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심사할 때 재판소는 주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한다.

- 문제의 영토에 국가가 배치한 병사의 수. 이는 재판소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이다(*Loizidou v. Turkey* (본안), §§ 16 및 56;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87).
- 지방 종속 행정부에 대한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으로 지방 종속 행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과 통제력 수준(*ibid.*, §§ 388-394;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9).

76. 재판소가 사건의 사실이 피청구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의무를 진다.



- 협약과 양립하지 않는 행위를 삼가야 할 소극적 의무(*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20-321);
- 적어도 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ibid.*, § 322).

77. 재판소가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심사한 사건은 다음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a. “사실상 적군의 권한 하에 놓인 영토는 점령된 것으로 본다. 점령은 그러한 권한이 확립되고 행사될 수 있는 영토에만 적용된다”라고 명시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42조에 정의된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적 “점령”에 관한 사건
- b. 체약국 영토 내에서 다른 체약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아 국제사회가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실체를 새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

### i. “전통적인” 군사점령

78. “전통적인” 군사점령의 틀에서 점령국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이라크*와 관련된 많은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 영국, 두 국가의 동맹군은 바트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에 입성했다. 2003년 5월 1일, 연합군은 주요 전투작전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했고, 미국과 영국은 점령국이 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의 치안 회복을 포함하여 “임시적으로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연합군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를 수립했다. 2003년 5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는 점령국들이 맡은 치안유지 역할을 인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는 연합군임시행정처에 “특히 치안 상태와 안정 회복을 향한 노력을 포함한 이라크 영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이라크 국민의 안녕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군의 이라크 점령은 2004년 6월 28일 연합군임시행정처 해산 및 이라크 임시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함께 종료되었다. 영국은 점령 기간에 다국적사단(동남부)의 지휘를 맡았다(*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9-23).

79.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은 영국이 2003년 바스라에서 점령국 권한을 행사했던 기간에 청구인의 친척 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중 3명은 영국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영국 순찰대 및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병력과 교전을 벌인 후 치명상을 입었으며, 다른 1명은 영국군의 총에 맞은 후 강요에 의해 강물에 뛰어들었고 결국 익사했다. 영국군 기지에서 사망한 마지막 피해자는 시신에서 모두 93개의 상처가 발견되었다. 재판소는 바트당 정권이 무너진 후 이라크 임시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영국은 이라크에서 (미국과 함께) 보통 주권 정부에 의해 행사되는 공권력의 일부를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영국은 이라크 남서부 지역의 치안유지에 대한 권력과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영국과 2003년 5월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영국군이 수행한 치안유지 작전 중 살해당한 사망자 사이에는 관할권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 결론에 비추어, 재판소는 영국이 해당 기간 중 이라크 남동부 지역에서 실효적 군사적 통제를 행사했으므로 영국의 관할권이 확립되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143-150). 그러나 재판소가 나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알-스케이니 및 기타 사건의 사실 진술에는 영국이 점령했던 남동부 지역에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한 것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영국 국내 절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증거를 심리한 항소법원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 75,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20-23 및 80 참조).

80. 재판소는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GC] 판결일과 같은 날 *Al-Skeini and Others*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라크 민간인이 바스라에 있는 영국군 수용소에 3년(2004~2007) 넘게 억류된 것과 관련이 있다. *Al-Skeini and Others*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이미 임시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점령체제 종료 이후에 발행했지만, 영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여전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었다. 피청구국 정부는 영국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다국적군의 일부로 작전을 수행하던 시기에 청구인이 억류되었으므로, 문제의 구금이 영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구금되었을 당시 영국군이 영국의 주권이 아닌 다국적군의 국제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라크 침공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는 바트당 정권이 무너질 경우 이라크에서 역할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5월, 영국과 미국은 바트당 정권을 무너뜨린 후 이라크에서 치안을 통제했고, 유엔은 인도적 지원, 이라크 재건 지원,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지원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치안유지 역할을 맡지 않았다. 재판소는 후속 결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국적군 소속 부대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거나 궁극적인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유엔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청구인에 대한 억류 결정은 수용소를 지휘하는 영국군 장교가 내렸으며, 청구인은 영국군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바스라시의 수용소에 억류되었다. 청구인에 대한 억류 결정이 이라크 관리와 다국적군의 비영국 대표들이 포함된 위원회에 의해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이러한 검토가 수행된 사실로 인해 영국의 억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알제다(*Al-Jedda*)는 구금 기간 동안 영국의 권한과 통제에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청구인 억류에 대한 책임이 영국에 있으며, 억류 기간 동안 청구인이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영국의 관할권에 속했다고 확인했다(§§ 76-86). 따라서, 재판소는 영국이 문제의 영토에 대해 행사한 통제의 범위와 성격을 평가하는 대신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권한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

81. 청구인의 형제가 영국군에 붙잡혀 2003년 교전 중이던 이라크 남동부 부카 수용소(*Camp Bucca*)에 구금된 것과 관련된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에서도 같은 접근법이 적용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형제가 영국군의 통제를 받았고, 나중에 발견된 시신에는 고문당한 후 처형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Al-Skeini and Others*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가 다른 이유로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속했기 때문에 관련 기간에 영국이 문제의 지역을 실제로 통제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형제가 부카 수용소에 수용된 후 영국의 권한에서 미국의 권한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카 수용소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재판소는 영국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권한과 통제는 청구인의 형제가 부카 수용소에 수용된 때부터 영국군의 배타적인 통제를 받는 합동전방신문조 수용소로 옮겨진 기간까지 확대되었다. 영국 당국은 청구인의 형제를 신문한 후 그를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 후, 그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이라고 판단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석방을 앞두고 민간인 대기지역으로 옮겨졌을 때, 청구인의 형제는 부카 수용소에서 민간인 대기지역으로 타고 온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무장병력에 의해 구금되어 있었고 영국의 권한과 통제 하에 있었음이 명확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형제는 문제의 기간 내내 영국의 관할권에 속했다(§§ 75-80).

82. *Jaloud v. the Netherlands*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Al-Skeini and Others* 및 *Al-Jedda* 사건에 비해 역외 관할권 개념을 확장했으며,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42조에 언급된 “점령국” 지위 그 자체가 협약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관할권 문제에서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42). 네덜란드 정부는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후 군대를 파견했으며, 네덜란드군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영국군 장교가 지휘하는 다국적사단 소속으로 이라크 남동부에 주둔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아들은 2004년 4월 이라크 민방위군(Iraqi Civil Defence Corps, ICDC)이 통제하고 네덜란드 육군 지휘관의 통제와 직접 감독을 받는 네덜란드 육군 소속 군인이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인 검문소를 통과하려다 총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다. 청구인의 아들은 네덜란드 육군 중위의 총격을 받았다. 재판소는 네덜란드가 영국 장교의 작전통제권을 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권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사건 기록의 증거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이라크의 자국 군대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의 무력 사용에 관한 별도 규칙을 제정할 권한 또한 개별 파병국의 고유 관할영역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사건의 상황에서 네덜란드군이 이라크든 영국이든 다른 어떤 국가의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 형제의 사망 사건이 *네덜란드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142).

83. 그러나 *Issa and Others v. Turkey*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터키군은 1995년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라크 쿠르드족 목동들을 체포한 후 동굴로 끌고 가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소는 해당 작전에 많은 수의 터키군 병력이 참여했음에도 터키가 문제의 지역 전체에 대해 전반적인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있었던 당시 터키군이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이 사건 기록의 증거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들이 *터키 정부의 관할권에 속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71-82).

84.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간 사건에서 2014년 2월 27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크림반도(세바스토폴시 포함)가 러시아 연방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해 일련의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크림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시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합병하는 “통일 조약”을 체결한 2014년 3월 18일 이전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두 기간을 별도로 다루는 방식으로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다. 2014년 3월 18일 이전 기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 133-140) 사건에 정의되어 있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따랐으며, 문제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적 통제”를 근거로 관할권 역외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재판소는 크림반도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군사력과 실제 행동 모두를 평가하고 사건의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측면인 군사력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당시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증원이 양국 사이에 시행 중인 양자협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정적인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전투 잠재력보다는 문제의 지역에 파병된 피청구국 군대의 상대적 규모와 군사력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또한 러시아군을 증원한 이유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두 번째 측면(러시아 육군의 실제 행동)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러시아 군인들이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문제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수준과 피청구국 여러 고위직 공무원의 공개적인 진술을 고려했다. 재판소는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러시아가 문제의 기간에 크림반도에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국이 지방 권한 당국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통제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문제의 기간에 협약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협약 제1조에 따른 피청구국의 관할권에 관한 상기 검토 결과와 무관하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정부가 문제삼은 행정실무의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에 러시아 정부의 “관할권”에 속했으며*, 해당 관할권이 또한 “국가 대리인의 지배” 원칙에 근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 308-352).

## ii.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실체 설립

85. 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네 가지 서로 다른 역사적-정치적 상황, 즉 북키프로스에서의 터키의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Transdniestria)*와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South Ossetia and Abkhazia)* 각각에서의 러시아의 위반에 대한 책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서의 아르메니아의 위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고려했다.

86. 체약국 국가기관이 자국 관할권에서 다른 개인의 협약 권리를 침해하는 사인들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해당국에 협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독립선언을 한 당국의 행위를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18).

87. 첫 번째 일련의 사건은 1974년 7월과 8월에 터키가 북키프로스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 이후 북키프로스의 상황과 키프로스 영토의 지속적인 분단에 관한 사건이다. 1983년 11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이 독립을 선언하고 1985년 5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헌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는 협약에 따라 터키가 위반 혐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국제법상 불법 단체임을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설립을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터키를 포함한 다른 주권국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입헌 민주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터키는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에 귀속되며, 청구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터키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Cyprus v. Turkey* [GC], §§ 13-16).

88. 위원회와 재판소는 국제 관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결의에 명시된 규탄 사항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협약 체약국인 키프로스 공화국만이 키프로스의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했다(*Cyprus v. Turkey*, 위원회 결정; *Loizidou v. Turkey* (선결적 항변), § 40; *Loizidou v. Turkey* (본안), § 44; *Cyprus v. Turkey* [GC], § 61);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 193).

89. 재판소는 다음 사건에서 북키프로스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반이 *터키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 위원회는 최초로 국가 간 사건 2개를 검토한 *Cyprus v. Turkey* 사건에서 키프로스에 주둔 중인 터키군이 터키의 대표라고 판결했다. 이는 터키군 지휘관이 키프로스에 있는 모든 터키군 자산과 병력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한, 이러한 군 자산과 병력이 터키의 관할권에 속함을 의미한다.
-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인 청구인이 북키프로스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했다고 제소한 *Loizidou v. Turkey* 사건에서 (선결적 항변),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청구인이 재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터키군이 키프로스 북부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터키군에 의해 자신의 사유지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문제의 행위는 협약 제1조의 의미상 터키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었다(*ibid.*, §§ 63-64). 같은 사건의 본안 판결에서, 재판소는 터키를 상대로 제기된 위반 혐의의 “귀책성”을 고려한 후, 분쟁지역에 파견된 현역 터키군 병력의 규모에 비추어 터키군이 북키프로스에서 전반적인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터키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권한 당국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 실제로 구체적인 통제를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통제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터키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조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터키의 “관할권”에 속했으며, 그 결과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터키에 “귀속”되었다(*Loizidou v. Turkey* (본안), §§ 52-57).
- 국가 간 사건인 *Cyprus v. Turke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터키가 해당 지역에 주둔 중인 터키군을 통해 실제로 북키프로스에서 전반적 통제를 행사했다는 *Loizidou* 사건의 일반적인 판결을 반복했다. 재판소는 협약에 따른 터키의 책임이 북키프로스에 있는 자국 군인이나 공무원의 행위에 국한될 수 없으며, 터키군의 지원과 기타 지원 덕분에 존속하는 지방 행정부의 행위도 터키의 책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키의 “관할권”은 협약과 터키가 비준한 추가의정서에 명시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위반에 대한 책임은 터키에 귀속된다(§§ 76-77).
- 키프로스 공화국 영토에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의 옛 주민 몇 명이 살해된 사건과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권한 당국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한 수사와 관련된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사회가 키프로스 북부가 터키의 점령 하에 있다고 간주하며,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키프로스는 협약의 목적상 터키의 실효적 통제 하에 있었다. 둘째, 살인 용의자들은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도주했고, 그 결과 키프로스 공화국은 해당 살인 용의자들을 상대로 자체적인 범죄 수사를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협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193).

90. 두 번째 일련의 사건은 몰도바 영토에 수립된 실체인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Moldovan Republic of Transdniestria)”에서 자행된 행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에 관한 사건이다.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사건에서,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대법원”에서 사형과 중형을 비롯해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은 청구인들은 일련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에 주둔했던 옛 제14군(소련과 러시아에 속했던) 소속 부대들이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분리주의 세력과 전투를 벌였고 또 어떤 부대는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분리주의 세력 편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언급했다.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분리주의자들은 제14군의 무기고에 보관되었던 대량의 무기까지도

자발적으로 양도받았으며, 러시아군은 무기 양도에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몰도바 정부와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분리주의자가 대립하던 기간 내내, 러시아 지도자들은 분리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했다. 휴전협정 이후에도 러시아는 분리주의 정권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분리주의 정권이 세력을 강화하고 몰도바에 대한 일정한 자치권을 획득하며 존속할 수 있었다.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분리주의 정권과 러시아 정부가 협력하는 상황에서 분리주의 정권으로의 신병인도를 포함해 러시아군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모든 행위는 분리주의 정권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귀속시킨다. 전체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 후,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지역이 러시아의 실효적 권한 하에 있었거나 적어도 러시아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어느 경우이든 분리주의 정권이 협약 비준 전후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지원 덕분에 존속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러시아의 “관할권”에 속했고, 문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377-394).

91.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에 관한 이 결론은 다음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 대재판부에 의해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 4명 중 2명이 계속 구금된 것과 관련된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각각 석방된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러시아의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분리주의 정권 지원 정책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재판소는 러시아가 분리주의 정권에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만큼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석방된 날에도 러시아군이 몰도바 영토에 주둔하여 러시아 연방의 완전 철수 약속을 어기고 몰도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협약 제1조의 목적상 러시아의 “관할권”에 속했다(*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16-120).
-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사건은 1992년과 1994년 분리주의 정권이 학교에서 라틴 문자 사용을 금지한 언어 정책 및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영향에 대해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의 몰도바 공동체에 속한 아동과 학부모가 제소한 사건이다. *Ilaș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및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판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결론을 거듭 강조한 후, 재판소는 러시아가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분리주의 정권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가스 공급, 연금 지급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러시아 대리인이 청구인들의 학교에서 채택된 조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의가 제기된 언어 정책은 러시아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안이었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16-123).
-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사건은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금된 사기 혐의자와 관련된 사건이다. 반대 결론을 내릴 만한 새로운 관련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소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판결에 명시된 러시아의 관할권에 대한 결론이 이 사건의 관련 기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보았다(§§ 109-111; 이후 기간에 관한 동일한 논증에 관해서는 *Apcov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 24 참조).

92. 재판소가 심사한 *세 번째* 사건은 조지아에 설립된 두 분리주의 실체, 즉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관한 사건으로 특히 2008년 8월 조지아와 러시아 간 발생한 무력 충돌 기간과 이후 기간에 양국 사이의 갈등, 도발 및 각종 사건이 절정에 달했던 상황을 다뤘다.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교전 중단 이후에도 러시아군이 상당한 규모로 주둔한 사실을 인정했고, 러시아 연방이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계속 제공해온 경제적, 재정적 지원의 규모를 보여주는 수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U 진상조사단 또한 경제적,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존적 관계가 존재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제출된 정보는 분리주의 실체와 러시아 연방 사이에 기존 종속관계가 존재했음을 시사했으며, 이 관계는 적극적 교전 단계와 교전 중단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EU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암암리에 합병”했다고 서술했다.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이 적극적 교전 종료일과 러시아군의 공식 철수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조지아 영토에 위치한 “완충지대”에서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교전 중단 및 러시아군 철수 이후에도 러시아 관계자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점과 특히 러시아 연방과 협력 및 지원 협정을 체결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세력이 러시아에 의존하여 존속한 점은 두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휴전 이후 발생한 사건은 협약 제1조의 목적상 러시아 연방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Georgia v. Russia (II)* (본안), §§ 161-175).

93. 전쟁포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비록 러시아군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남오세티야군의 행동 또한 러시아 연방에 책임이 귀속되며, 이러한 행동 각각에 대해 “세부적 통제”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ibid.*, § 276). 분쟁을 피해 남오세티야를 떠난 후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조지아 국민의 경우, 이들 중 다수가 러시아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들 실항민의 집이 러시아 연방의 “실효적 통제”를 받는 지역에 위치한 탓에 돌아갈 수 없었던 점과 러시아 연방이 관리상 경계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조의 목적을 위한 관할권적 관련성이 충분히 확립된다(*ibid.*, §§ 293-295).

94. 마지막으로 재판소가 심사한 *네 번째* 사건은 아제르바이잔의 한 지역에 설립된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에서 자행된 행위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책임에 관한 사건이었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될 당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Nagorno-Karabakh Autonomous Oblast, “NKAO”)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Azerbai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Azerbaijan SSR”)에 속한 자치주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분리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Armenian SSR)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사이에는 국경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1988년 이 지역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직후인 1991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소비에트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 설립을 발표했다. 1991년 1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9.9%의 유권자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 분리독립에 찬성한 후,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은 1992년 1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독립을 재천명했다. 그 후 분쟁이 점차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1993년 말 아르메니아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옛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거의 모든 영토와 이에 인접한 아제르바이잔 지역 중 7개 지역을 장악했다. 1994년 5월, 교전국들은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이 협정은 여전히 발효 중이다.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의 일방적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 12-31; *Sargsyan v. Azerbaijan* [GC], §§ 14-28).

95.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사건에서, (아제르바이잔 영토이며, 아르메니아에서 분리 독립한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사실상 통제하는) 라촌 주(Lachin district) 출신의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족인 양국 간 무력 충돌로 인해 라촌 주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집과 사유지에 돌아갈 수 없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협약 제1조에 따라, 재판소는 전·현직 아르메니아 정부 관계자의 모든 보고서와 공개 성명을 검토한 후, 아르메니아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물자와 조연을 제공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해당 군사물자 지원이 문제의 영토에 대한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사건 기록 또한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에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아르메니아 여권을 취득해야 했다. 재판소는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이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고도로 통합되어 있었고, 아르메니아가 제공한 군사, 정치, 재정 및 기타 지원 덕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과 그 행정부가 존속할 수 있었으므로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접 영토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주장된 사실은 *따라서 아르메니아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 169-186).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국민이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 법원에서 의무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아르메니아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Avanesyan v. Armenia*, §§ 36-37).

## b. 자국 영토에서 외국의 군사행동(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군사행동)이 수행되는 국가의 관할권

96. “소극적” 체약국의 책임, 즉 자국 영토에서 다른 국가(협약 당사국 여부와 무관)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지방 정권이 착수한 군사행동이 수행되는 국가는 “적극적” 체약국의 책임과 다른 논리를 적용된다. 재판소는 소극적 국가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극적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관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모든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이 “소극적” 국가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는 추정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반면, 소극적 국가가 영토 일부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제/한*될 것이다. 다시 말해, 관할권(또는 권한)에 대한 추정이 적용되며, 재판소는 관할권에 대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Assanidze v. Georgia* [GC], § 139).

97. 피청구국의 관할권은 문제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다른 국가의 군대에 의한 군사점령, 전쟁 또는 반란 혹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외국의 행위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재판소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자국 영토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국의 행위를 검토해야 한다. 협약 제1조에 따른 체약국의 약속은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자제할 의무와 더불어 자국 영토 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적극적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영토 일부 지역에서 제한되는 경우에도 계속 적용되므로, 국가는 여전히 가능한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12-313; *Sargsyan v. Azerbaijan* [GC], §§ 127-129). 그러나 협약 제1조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피청구국의 의무는 그 권한의 범위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외교적, 경제적, 사법적 또는 기타 조치를 시행할 적극적 의무로 제한되었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09;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31).



98. 위 원칙에 따라, 재판소는 몰도바 공화국이 자국 영토의 관련 지역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위반이 몰도바 공화국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고 인정했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22-331;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05-106;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09-110;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99-100).

국제법상 해당 지역이 몰도바 영토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사실에 의해 몰도바 공화국은 협약 제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외교적 수단을 강구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원칙의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Pocasovschi and Mihaila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 43-44 참조).

이 사건이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열악한 상태의 몰도바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분리주의 실체가 수도와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수도, 난방, 전기 공급 중단을 명령한 지방정부가 다른 사건과 달리 분리주의 실체의 통제 하에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몰도바 국가기관은 위반 주장이 제기된 교도소는 물론이고 재소자에 대해서도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다. 따라서 몰도바 국가기관은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다(§ 46).

99. *Sargsyan v. Azerbaijan* [GC] 사건에서, 1992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분쟁을 벌일 당시(위 참조) 아제르바이잔 샤후만 주(Shahumyan region)의 집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던 아르메니아 난민은 샤후만 주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 사유 재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한 국가가 전쟁과 점령의 결과로 자국 영토 중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잃었으나 실항민이 자신의 사유지가 있는 지역이 여전히 해당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이 사유지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한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여 재판소의 심사를 요청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재판소는 가장 먼저 문제의 마을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관할권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협약 제1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재판소는 제시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임시 관할권 기간(즉, 아제르바이잔이 협약을 비준한 후의 기간)에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해당 마을에 주둔했는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소는 어느 당사자도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이 해당 마을에 군대를 주둔시킨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마을이 분쟁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지뢰와 군사기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아제르바이잔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나 북키프로스에 관한 다른 유사한 사건과 달리, 문제의 영토는 제3국 군대에 의해 점령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사실은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 132-151).

100. *Assanidze v. Georgia* [GC] 사건은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청구인은 첫 번째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을 받고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조지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의 지역자치단위인 아자리야 자치 공화국(Ajarian Autonomous Republic) 정부에 의해 구금되었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조지아가 자국 영토 전체에 대해 협약을 비준했으며, 다른 어느 국가도 아자리야에 대해 전반적인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협약 비준 당시, 조지아는 아자리야에 대해 협약 제57조에 따라 협약 적용을 구체적으로 유보하지 않았고, 아자리야 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판례법에 따라 제56조제1항에 언급된 경우(종속 영토)를 제외하고는 협약 적용에 있어서의 영토 배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보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가 된 사실은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조지아의 “관할권” 하에 발생했다(§§ 139-143). 다음으로 재판소는 주장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조지아에 “귀속”되는지 검토했다. 재판소는 조지아 중앙정부가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절차적 조치를 시행했고, 여러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아자리야 정부에 석방을 거듭 촉구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아자리야 지방정부에 직접 귀속되었다. 그러나 체약국이 모든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에 따른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각 협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에 따라 조지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44-150).

101. 체약국이 예외적인 사실 상황으로 인해 자국 영토 전체에 대한 권한 행사를 금지당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가 일시적으로 통제를 벗어난 영토에 대해 협약 제1조의 의미에 따른 관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Sargsyan v. Azerbaijan* [GC], § 130). 그렇지만, 재판소는 자국 영토에 속한 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만을 고려하여 체약국이 제1조에 따라 약속한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실 상황은 관할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해당 국가는 외국과 국제기구를 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여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지속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것은 재판소가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지만, 재판소는 실제 시행된 조치가 해당 사건에서 적절하고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청구가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 일은 특히 협약 제2조 및 제3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같은 절대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필수적이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33-334).

102. 일반적으로, 재판소의 기존 판례법에서 “소극적” 국가에 적용되는 다음 여섯 가지 적극적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 a. 세 가지 일반 의무
  - i. 문제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거듭 확인한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39-341 및 343;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08).
  - ii.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정권에 대한 어떤 유형의 지원도 제공하는 것을 자제한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45).
  - iii.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ibid.*, § 341-344;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08).
- b. 개별 청구인과 대한 세 가지 특별 의무
  - i.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청구인들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46-347;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09).
  - ii.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적절한 수단을 통해 청구인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47).
  - iii.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법 조치를 취한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46-347;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10).

103. 또한, 재판소는 문제의 “소극적” 국가가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지속적이고 적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 348-352;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 111;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 148). 하지만, 해당 국가가 재판소의 판례법에 의해 정의된 적극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협약 제1조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II.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다른 국가와의 국가 권한 공동 행사

104. 체약국이 외국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체약국이 협약에 따라 스스로 진 의무를 면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Jaloud v. the Netherlands* [GC], § 143).

105. 국가가 국가 간 협의체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협의체가 내린 결정의 영향을 받는 자가 협약 제1조의 목적상 해당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위원회는 *Hes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사건에서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다뤘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루돌프 헤스 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German National-Socialist Party) 총재는 베를린의 슈판다우 연합군교도소(Allied Military Prison in Berlin-Spandau)에서 수감되었다. 이 교도소는 4개 공동 점령국(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이 관리했으며, 교도소 관리에 관한 모든 결정은 4개국 대표가 모두 합의할 때만 내려졌다. 따라서 영국은 다른 세 국가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국 역할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공유 권한을 4개의 개별 관할권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영국의 교도소 관리에 참여한 행위는 영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청구가 협약의 인적 관할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A. 유럽연합에 대한 위반 혐의의 귀책성: 보스포루스 가정 또는 동등한 보호의 원칙

106. 피청구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채택된 EU 규정을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된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 세심히 고안된 판례법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 국가는 주권의 일부를 이전한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으로 국제법 의무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에 대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주권의 일부를 이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 따라 채택된 조치는 해당 국제기구가 협약에서 제공하는 보호와 최소한 동등한, 즉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정당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당성이 소멸된다.
  - 문제가 된 행위가 엄밀히 보아 피청구국의 국제법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해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 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해당 권리에 대한 보호가 명백히 부족한 경우

107. *M.S.S. v. Belgium and Greece* [GC] 사건에서, 벨기에 정부는 단순히 “더블린 제2규약(Dublin II Regulation)”에 따라 청구인을 그리스로 송환한 사실을 근거로 보스포루스 가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더블린 제2 규약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소위 “주권 조항”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청구인을 추방하지 않는 가운데 협약을 준수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보스포루스 가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339-340).

## B. 유엔에 대한 위반 혐의의 귀책성

108. 유엔에 관한 가설은 다음 두 상황을 다룬다

1. 국제 군사작전 및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국제 제재

### 1. 국제 군사작전

109. 국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인권침해 혐의가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문제의 군사작전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는 실체, 즉 궁극적인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는 실체를 확인하는 데 심사의 초점을 맞춘다. *Behrami and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dec.) [GC] 사건의 청구인들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NATO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각각 공습에 피해를 입었거나 자유를 박탈당한 피해자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유엔 주도 하에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가 "상당한 NATO 참여"와 더불어 "일원화된 지휘 통제 아래" 주둔군(코소보 평화유지군)을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이 결의는 또한 유엔 주도 하에 코소보 임시행정부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110. 재판소는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사실이 UN 때문에 발생했는지 고려했다. 재판소는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권한 위임에 주목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둔군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과 통제"를 유지했는지 여부가 결정적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이 심사기준을 적용한 후,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제로 "궁극적인 권한과 통제"를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코소보 임시행정부와 코소보 평화유지군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UN에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청구가 협약의 인적 관할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111.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은 점령국 지위를 가진 영국의 이라크 침공 중 영국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이라크인 사망자 6명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피해자들이 영국의 "관할권"에 속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협약 제1조에 따라 전통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재판소는 사건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기간에 영국이 이라크에서 (미국과 함께) 보통 주권 정부에 의해 행사되는 공권력의 일부를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협약 제1조의 목적상 영국과 살해당한 사망자 사이에는 “관할권적 관련성”이 존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내 점령군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했을 뿐이었다.

112. *Al-Skeini and Others* 사건의 판결일과 같은 날 내려진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소는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 수용소에 3년 넘게 억류되었던 이라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사했다. 피청구국 정부는 해당 억류의 책임이 영국이 아니라 유엔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는 점령 체제에서의 역할 분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엔은 단지 인도적 지원, 이라크 재건 지원,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지원 등의 역할을 맡았을 뿐 치안유지 역할을 맡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국적군 소속 부대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거나 궁극적인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억류한 조치를 유엔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113. 이 사건에서 영국의 두 번째 주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6호가 이라크에서 억류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유엔 헌장 제103조에 따라 결의에 명시된 의무가 협약에서 비롯된 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소는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언급했다. 헌장 제24조 제2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해석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에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할 의무를 부과할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 재판소는 협약의 요건과 가장 일치하고 협약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114. 그 밖에도, 최근 재판소는 2003년 교전 당시 영국군에 체포되어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이라크 국민과 관련된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판결에서 *Al-Jedda* 판례의 원칙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피청구국이 재판소에 국제법을 근거로 협약 제5조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거나 혹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인도법에 의해 부여된 구금 권한에 따라 협약 제5조에 따른 의무를 해석할 것을 요청한 최초의 사건이다. 재판소는 영국 정부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해자가 미국의 관할권이 아닌 영국의 관할권 하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재판소는 영국이 점령국 지위를 갖지 않은 영토에서 체약국의 대리인이 행동하고 그 대신 체약국의 행위가 국제인도법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국제 무력 충돌의 적극적 교전 단계에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결론이 기존 판례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또한 문제의 지역에 대한 권한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양된 후에도 영국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의 모든 측면에서 권한과 통제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국제 제재

115. *Nada v. Switzerland* [GC] 사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작은 이탈리아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스위스 영토 통과가 금지된 것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제한은 테러(특히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의 전쟁에 관한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스위스 국가기관이 부과한 것이었다. 재판소는 가장 먼저 인적 관할권과 관련하여 청구의 심리적격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적용에 관한 것이었지만, 문제가 된 결정은 스위스 국가기관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 재판소는 결의 조항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스위스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인권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의무를 회원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반박되었다고 추론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적용하는 사안에 있어 제한적이긴 하나 실질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 179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결의가 구속력이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으려 할 수 없다. 반대로, 국가는 “청구인의 개별 상황에 맞춰 제재 방법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시행했거나 적어도 이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소를 설득했어야 했다(§ 96).

116. 재판소는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사건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은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이라크 정보기관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개인 회사를 경영했던 이라크 국민이었다. 청구인은 이라크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2003)에 첨부된 제재 대상자 명단에 기재되었고, 스위스에 있는 청구인의 자산이 동결되었고 몰수 절차가 진행되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문제의 자산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단순히 확인했을 뿐이다. 반면, 스위스 연방법원은 청구인의 자산을 몰수하는 데 적용된 절차가 협약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유엔헌장에서 비롯된 의무와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린 결정이 다른 국제법 기준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며, 결의에 의해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가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에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할 의무를 부과할 의도가 없다는 (반박할 수 있는) 가정에 기초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결의가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인권 존중 의무에 대한 명확하고 명시적인 배제나 제한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항상 피청구국 법원에 자의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위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 C.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위반 혐의의 귀책성

117. 다른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항상 차등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구분한다.

118. 청구인이 해당 국제기구의 내부 운영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청구를 제기할 경우, 재판소는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관련 국제기구에 이양할 때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협약의 보호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스포루스* 가정을 적용한다(*Gasparini v. Italy and Belgium* (dec.); *Rambus Inc. v. Germany* (dec.); *Klausecker v. Germany* (dec.)).

119. 반면, 청구인이 해당 국제기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이 기구의 특정 결정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이러한 청구는 인적 관할권 측면에서 협약 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Boivin v. 34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Connolly v.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Beygo v. 46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López Cifuentes v. Spain* (dec.)). 피청구국이 해당 국제기구의 관련 절차 규칙에 따라 문제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약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Konkurrenten.no AS v. Norway* (dec.), § 41).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 —A—

[Aarrass v. Belgium](#) (dec.), no. 16371/18, 7 September 2021  
[Abdul Wahab Kha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1987/11, 28 January 2014  
[Andreou v. Turkey](#) (dec.), no. 45653/99, 3 June 2008  
[Al-Dulimi and Montana Management Inc. v. Switzerland](#) [GC], no. 5809/08, ECHR 2016  
[Aliyeva and Aliyev v. Azerbaijan](#), no. 35587/08, 31 July 2014  
[Al-Jedda v. the United Kingdom](#) [GC], no. 27021/08, ECHR 2011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1498/08, 30 June 2009  
[Al-Skeini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55721/07, ECHR 2011  
[Apcov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no. 13463/07, 30 May 2017  
[Assanidze v. Georgia](#) [GC], no. 71503/01, ECHR 2004-II  
[Avanesyan v. Armenia](#), no. 12999/15, 20 July 2021

### —B—

[Bakanova v. Lithuania](#), no. 11167/12, 31 May 2016  
[Banković and Others v. Belgium and Others](#) (dec.) [GC], no. 52207/99, ECHR 2001-XII  
[Behrami and Behrami v. France and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dec.) [GC], nos. 71412/01 and 78166/01, 2 May 2007

*Bekoyeva and Others v. Georgia* (dec.), no. 48347/08 and 3 others, 5 October 2021  
*Beygo v. 46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no. 36099/06, 16 June 2009  
*Boivin v. 34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dec.), no. 73250/01, ECHR 2008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ECHR 2005-VI  
*Brandão Freitas Lobato v. Portugal* (dec.), no. 14296/14, 11 March 2021

## —C—

*Carter v. Russia*, no. 20914/07, 21 September 2021  
*Cata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s. 43370/04 and 2 others, ECHR 2012  
*Chagos Island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5622/04, 11 December 2012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no. 13216/05, ECHR 2015  
*Cyprus v. Turkey*, nos. 6780/74 and 6950/75, Commission decision of 26 May 1975, Decisions and Reports 2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Connolly v.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dec.), no. 73274/01, 9 December 2008  
*Cummin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7306/05, 13 December 2005

## —D—

*Drozd and Janousek v. France and Spain*, 26 June 1992, Series A no. 240

## —G—

*Gasparini v. Italy and Belgium* (dec.), no. 10750/03, 12 May 2009  
*Gentilhomme, Schaff-Benhadj and Zerouki v. France*, nos. 48205/99 and 2 others, 14 May 2002  
*Georgia v. Russia (II) (merits)*, no. 38263/08, 21 January 2021  
*Güzelyurtlu and Others v. Cyprus and Turkey* [GC], no. 36925/07, 29 January 2019

## —H—

*Hanan v. Germany* [GC], no. 4871/16, 16 February 2021  
*Hass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750/09, ECHR 2014  
*Hess v. the United Kingdom*, no. 6231/73, Commission decision of 28 May 1975, Decisions and Reports 2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GC], no. 27765/09, ECHR 2012

## —I—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no. 48787/99, ECHR 2004-VII  
*Isaak v. Turkey* (dec.), no. 44587/98, 28 September 2006  
*Issa and Others v. Turkey*, no. 31821/96, 16 November 2004  
*Ivanțoc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no. 23687/05, 15 November 2011



—J—

*Jaloud v. the Netherlands* [GC], no. 47708/08, ECHR 2014

—K—

*Klausecker v. Germany* (dec.), no. 415/07, 6 January 2015  
*Konkurrenten.no AS v. Norway* (dec.), no. 47341/15, 5 November 2019

—L—

*Loizidou v. Turkey* (preliminary objections), 23 March 1995, Series A no. 310  
*Loizidou v. Turkey* (merits),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  
VI  
*López Cifuentes v. Spain* (dec.), no. 18754/06, 7 July 2009

—M—

*M.N. and Others v. Belgium*, no. 3599/18, 5 May 2020  
*M. v. Denmark*, no. 17392/90, Commission decision of 14 October 1992, *Decisions and Reports* 73  
*M.A. and Others v. Lithuania*, no. 59793/17, 11 December 2018  
*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no. 3394/03, ECHR 2010  
*Marković and Others v. Italy* (dec.), no. 1398/03, 12 June 2003  
*Marković and Others v. Italy* [GC], no. 1398/03, 14 December 2006  
*Mozer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GC], no. 11138/10, ECHR 2016  
*M.S.S. v. Belgium and Greece* [GC], no. 30696/09, ECHR 2011

—N—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and 8697/15, 13 February 2020  
*Nada v. Switzerland* [GC], no. 10593/08, ECHR 2012

—O—

*O’Loughli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3274/04, 25 August 2005  
*Öcalan v. Turkey* [GC], no. 46221/99, ECHR 2005-IV

—P—

*Pad and Others v. Turkey* (dec.), no. 60167/00, 28 June 2007  
*Pocasovschi and Mihaila v. the Republic of Moldova and Russia*, no. 1089/09, 29 May 2018

—Q—

*Quark Fishing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5305/06, ECHR 2006-XIV

—R—

*Rambus Inc. v. Germany* (dec.), no. 40382/04, 16 June 2009  
*Rantsev v. Cyprus and Russia*, no. 25965/04, ECHR 2010  
*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nos. 75734/12 and 2 others,  
19 November 2019  
*Romeo Castaño v. Belgium*, no. 8351/17, 9 July 2019

—S—

*Sargsyan v. Azerbaijan* [GC], no. 40167/06, ECHR 2015  
*Shavlokhova and Others v. Georgia* (dec.), no. 45431/08 and 4 others, 5 October 2021  
*Solomou and Others v. Turkey*, no. 36832/97, 24 June 2008  
*Stephens v. Malta (no. 1)*, no. 11956/07, 21 April 2009

—U—

*Ukraine v. Russia (re Crimea)* (dec.) [GC], nos. 20958/14 and 38334/18, 16 December 2020

—V—

*Vasiliciuc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15944/11, 2 May 2017  
*Veronica Ciobanu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69829/11, 9 February 2021

—W—

*W. v. Ireland*, no. 9360/81, Commission decision of 28 February 1983, Decisions and Reports  
32  
*W. v. the United Kingdom*, no. 9348/81, Commission decision of 28 February 1983, Decisions  
and Reports 32

—X—

*X. v. Germany*, no. 1611/62, Commission decision of 25 September 1965, Yearbook 8  
*X. v. the United Kingdom*, no. 7547/76, Commission decision of 15 December 1977,  
Decisions and Reports 12  
*X. and Y. v. Switzerland*, no. 7289/75, Commission decision of 14 July 1977, Decisions and  
Reports 9